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 성 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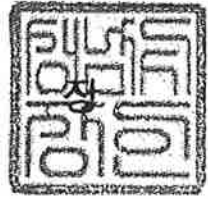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장(自然葬) 홍보 운동 관련 협조 요청

1. 경기도 노인복지과-8282(2018.05.04.)호 및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1539 (2018.05.0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연장지 조성 규제 완화 등 자연장 제도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사)대한노인회에서는 장묘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자연장(自然葬) 홍보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대한노인회에서 자연장 홍보 순회교육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시간 30분)

붙임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 협조 요청(대한노인회) 1부. 끝.

## 성 남 시



수신자 ~~전북선기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44개소

주무관	신동희	장애인정책팀	김판규	장애인복지과	2018. 12. 6.
		장		장	김제균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과-30415 (2018. 12. 6.) 접수 기업지원과-12718 (2018. 12. 6.)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 <http://www.seongnam.go.kr/>

전화번호 031-729-2785 팩스번호 031-729-2789 / [gratiaplina@korea.kr](mailto:gratiaplina@korea.kr) / 대국민 공개

학습하는 시민,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성남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수 신 : 본청,직속기관,사업소,소속기관,녹색기업협의회, 요양병원,요양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복지관,평택항만공사 군포물류센터  
 참 조 : 노인복지과장님  
 제 목 : 자연장 홍보운동 관련 협조 요청 (국토이용효율 및 환경보존을목적)

### 1. 관련근거 (순회홍보교육)

- 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10호, 2011.03.30.) 제3조(협조 및 지원)
- 나.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기조업무-00068) 관련 협조 청원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대한노인회 지원법 제정은 공익단체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말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옵고, 아울러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본회에서는 정부 관련정책구현의 일환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장묘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자연장(自然葬)홍보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효율화와 환경보전/개선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라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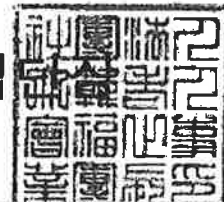
3. 위 관련문서 등을 참조하시어 귀 원 소속 임직원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안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협조사항을 적극경도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 음 -----

- 가. 협조사항 : 홍보시간 배려 / 전화(방문)협의
- 나. 홍보내역 : 선진장묘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자연장 홍보운동 및 복지사업 안내  
 - 홍보 관련동영상 프레젠테이션 홍보시간 30분
- 다. 주관단체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 ☎ 1661-4483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대한노인회 중앙회 별관

붙임 : 관련공문 사본 및 관련자료. 끝.

## (사)대한노인회 복지사업



협조자 : 부단장 이 중 남  
 담 당 : 간사:김윤희1661-4483  
 운영위원 010.2488.6538

단장 박남희,박천석  
 hw0538@hanmail.net

시 행 : 복지사업단-1539 (2018.05.03.)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효창동) 대한노인회 중앙회별관 홈페이지 : www.koreapeople.net

전 화 : 1661-4483 전송 :031-557-9886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한노인회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3991호, 2016.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조세감면 등)** 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 등의 보고)** 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3991호, 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연장 홍보 안내·협조

1. 본회에서 추진 중인 자연장 홍보운동은 연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한 사회공익운동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바라옵고,
2. 본회 문서 등을 함께 전송하오니 적극 참조하시어, 귀 회 관련 회원사 등 가능한 많은 지도계층으로 문서 시행안내를 원하오니 해아려 선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배려드리지 못한점 해량하시옵고, 을미년 새해 행운이 늘 함께 할 것을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 복지사업단 부단장/김윤희간사(교육총괄팀)☎ 1661-4483 >

### <참고사항>

- 3%에 머물던 <자연장 참여도>가 정부의 지속적인 관련 정책 추진으로 사회 각계의 깊은 관심은 물론 본 회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운동 등으로 20% 이상 확산되고 있음은 미흡하나마 <묘지로 인한 환경훼손과 국토이용 결림돌>을 줄이는, 참으로 다행한 일로 더욱 많은 성원바랍니다.